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9

발의연월일: 2021. 6. 14.

발 의 자:최종윤·김민석·김성주

김승남 · 남인순 · 양경숙

이원욱 • 조오섭 • 최혜영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단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 우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정지기간의 연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생존이 확인되고 나서 정지기간 동안의급여액을 수급권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없이 운영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6절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 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 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이 정지된 후 제7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연금액은 그 기간 동안 소재를 알 수 없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

소,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급이 정지된 후 제73조제2항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다른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연

금액은그기간동안소재를알수없던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지급된것으로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의 취소,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